

# 『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현행 조례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여 유치  
원이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.

- 이에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 서울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동등한 안전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.
  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  
안 제2조제1호 학교의 정의에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했습니다.
  
-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